

# 2020년 고용·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및 납부 안내

- ❖ 대상: ①건설업·벌목업 ②고용보험 자영업자('12.1.21. 이전 가입자)
- ❖ 신고·납부대상 보험료: 201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0년도 개산보험료
- ❖ 신고·납부기한: 2020년 3월 31일(화)
- ❖ 보험료 신고방법: 보험료 산정 후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

- ▶ 전자신고: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(<http://total.kcomwel.or.kr>)를 통해 신고
- ▶ 방문, 팩스,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(지역본부, 지사)에 제출
- ※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 당부

## ❖ 보험료 산정방법

2019년도 확정보험료 = 2019년도 보수총액 × 보험료율

- < 2019년도 보수총액 산정방법 >**
- ▶ 건설 본사: 2019년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(지급결정된 미지급보수 포함)
  - ▶ 건설 현장: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+ (외주공사비 × 30%)
  - ※ 2019년부터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이 확대되어 신고대상이 있는 사업장은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를 구분하여 신고

구분	산재보험	고용보험
본사 보수총액	(일반)사무(내근)직원 보수 (특고)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보수로 산정	사무(내근)직원 보수 +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
건설일괄 보수총액	(일반)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+현장일용직 보수+(외주공사비×30%) (특고)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보수로 산정	현장일용직 보수 + (외주공사비×30%)

2020년도 개산보험료 = 2020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× 보험료율

- < 2020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산정방법 >**
- ▶ 건설 본사: 2020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보수총액 추정액
  - ▶ 건설 현장: 총공사금액 × 27%
  - ※ 2020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2019년도 보수총액의  $\frac{70}{100}$  이상  $\frac{130}{100}$  이하인 경우에는, 2019년도 보수총액을 2020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적용

## ❖ 보험료 납부방법

- ▶ 일시납부 원칙.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, 분할납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할 경우 3% 공제
- ▶ 납부서에 직접 실제 납부할 금액을 기재 후 가상계좌, 인터넷지로(뱅킹), 신용카드로 납부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료 신고·납부 안내책자를 참고